

7. 감사 의견서

법 제71조 우리조합 정관 제137조 제2항에 의하여 2013년 1월 17~18일 조합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사업보고서, 재무상태표, 이익잉여금처분(안)의 각 조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내용이 적정함을 인정함.

2013년 01월 18일

풍기인삼협동조합

감사 권용화 (인)

감사 김석철 (인)